

#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성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4.

발의자 : 김성태 · 김도읍 · 김학용  
신상진 · 홍문표 · 이종명  
황주홍 · 홍철호 · 김태흠  
강석호 · 김선동 · 이현재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비산먼지·침출수·악취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으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,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.

이에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(제13조의2제2항 제2호 삭제, 제25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2호 신설).

##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3항제3호 중 “허가를”을 “승인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(이하 “임시보관장소”라 한다)로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려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 1. (생 략)  2. <u>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</u>  ③ ~ ⑥ (생 략)	제13조의2(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5조(허가취소 등) ① · ② (생 략)  ③ 시·도지사는 수집·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	제25조(허가취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	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허가를</u>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 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	3. <u>승인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
<u>&lt;신 설&gt;</u>	<u>4.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</u> <u>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</u> <u>경우</u>
④ 시·도지사는 수집·운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 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.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</u> <u>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행위</u> <u>를 하는 경우</u>
<u>2. · 3. (생 략)</u>	<u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</u> <u>같음)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